

제 호	
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(국민경제유지업체용)	
업체명	대표자
소재지	전화번호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임무를 고지하니 자체 실시계획 작성 등 전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 다 음 1. 동원 예정 품목 : 평시 생산품 또는 사업 2. 자체 실시계획은 동원 예정 품목의 전시 소요를 고려한 단계별 생산·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전시 기업 활동을 유지하는 한편, 유사시 즉각 동원에 응할 수 있도록 작성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직인	

자 르 는 선

제 호		
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		
업체명	대표자	
소재지	전화번호	
수령인	성명 (서명 또는 인)	대표자와의 관계
	수령일	수령 장소

※ 임무고지서 수령 후 지정기간 내에 동원 예정 품목의 생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통제기관장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